

# 이문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 입주자모집공고



## ■ 청약시 유의사항

※본 대상 건물은 2024.03.29.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서 완전 후분양형이며, 분양잔금 납부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습 목적의 청약 및 자금(계약금) 부족 등』 계약의사가 없으신 분들은 청약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습청약'등 청약고객의 이유없는 미계약 사례로 인해 실수요자 당첨의 기회를 상실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청약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 상담전화(☎02-995-5949)등을 통해 분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분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동법 제57조 등 관련규정에 의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분양공고일(2024.11.06.)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자격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타입별 2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 홈페이지 <http://www.hanwon.co/imun> 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일간 확인할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 선정 및 층, 호수 결정방법
일 시	2024.11.18(월)	2024.11.21(목) (16:00 이후)	2024.11.25(월) (10:00~17:00)	<b>한국부동산원</b> <b>전산프로그램 추첨에의해</b> <b>신청 유형(타입)별 무작위 결정</b>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홍보관 방문계약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스마트폰앱</li> </ul>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48-11번지 근린생활시설 103호	

※ 스마트폰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스마트폰앱을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도시형생활주택	○	○	○	○	○	○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승인번호 2021-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 본 분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계약 및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48-11, 348-12번지

▣ 대지면적 : 3,734.85㎡

▣ 연 면 적 : 전체 연면적 7,906.69㎡ 中 도시형생활주택 7,148.80㎡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지하1층(어린이집,근린생활시설,지하주차장,부대시설), 지상1층(계단실), 지상2층~지상6층(도시형생활주택)

▣ 공급규모 : 지하1층~지상6층 2개동 中 도시형생활주택 4세대

▣ 주차대수 : 자주식 75대 中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67대

□ 공급대상물

(단위 : m<sup>2</sup>,세대)

주택형	타입	세대별 계약 면적(m <sup>2</sup> )				기타공용면적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대지지분(m <sup>2</sup> )	공급세대수
		세대별 공급 면적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75.63	75D	75.63	8.95	84.58	23.56	108.14	50.07	1	
77.82	77E	77.82	9.40	87.22	24.25	111.47	51.83	1	
79.96	79A	79.96	9.43	89.39	24.90	114.29	53.52	1	
83.89	83B	83.89	10.59	94.48	26.13	120.61	55.84	1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동	호수	타입	공급 세대	분 양 금 액			계약금 (5%)		잔금 (95%)
				대지비	건축비	계	1차	2차	입주지정일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01	204	79A	1	601,386,500	243,613,500	845,000,000	10,000,000	32,250,000	802,750,000
	205	83B	1	601,386,500	243,613,500	845,000,000	10,000,000	32,250,000	802,750,000
102	204	75D	1	619,890,700	251,109,300	871,000,000	10,000,000	33,550,000	827,450,000
	206	77E	1	577,188,700	233,811,300	811,000,000	10,000,000	30,550,000	770,450,000

□ 공통사항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평형환산방법:공급면적(m<sup>2</sup>)×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3.3058)
- 상기 분양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동의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수 있음을 확인함.
-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상기 분양금액에는 각 타입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 발코니 확장은 외관의 통일성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전세대 일괄적으로 확장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주체에 대하여 미확장 또는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는 무상으로 제공됨.
- 상기 세대별 분양금액은 층, 향등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하였으니 분양홍보관 및 세대를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분양금액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각 층별, 호별 분양면적 및 타입이 상이하며, 층별 호수기재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분양홍보관 및 세대를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및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층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홀, 계단실등)은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과 함께 전체 공용으로 함.
- 본 건축물은 도시형생활주택,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축물로 시설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적의 조정하여 시설별 대지지분을 분할하였고 도시형생활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적의 조정하여 배분하였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면적 및 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1차,2차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지정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함.
- 분양금액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하며,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본 건축물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제9호에 따라,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1항, 제20조부터 22조까지, 제32조 제1항, 제59조에 의한 규정만 적용함.
- 본 건축물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임.
- 본 공동주택은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2. 청약 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집공고일(2024. 11. 06.)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호실은 한국부동산원의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관련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 가능하며, 청약전에 청약통장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안내

구분	내용
이용안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	청약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

		구비사항	
일반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서</li> <li>• 청약신청금</li> <li>•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li>•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인감증명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청약신청용)</li> <li>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시는 제출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li> <li>(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li> </ul>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1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li> <li>(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신청서	- 청약신청서 -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 접수가능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공급자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만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한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합니다.
- 청약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며, 동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매를 하거나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시행자"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 됩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4년 11월 21일(목) 16:00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 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	--

(동·호실 결정방법 포함)	
기타사항	• 타입별 200%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미계약호실 발생 시 공급자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납부계좌로 계약금납부 및 계약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li>•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제한 없이 임의로 분양함</li> <li>•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li> </ul>
부정당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li> </ul>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환불 됨</li> <li>•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받아야 함</li> </ul>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자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소	계약금 납부
2024년 11월 25일(월)	10:00~17:00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 분양홍보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348-11번지 근린생활시설 103호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공급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신영부동산신탁)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및 잔금	하나은행	881-910004-16705	신영부동산신탁(주)	※ 무통장 입금시 의뢰인란에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의 성명을 기재요망 (예시 : 101동 103호 홍길동의 경우 → 101103홍길동)

- 계약금을 포함한 모든 분양대금은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이 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임.
- 당사에서는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2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101201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위 수납은행 계좌의 변경은 공급자가 공급자의 대주단 승인을 얻어 계약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공급자가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아 분양대금의 납부가 무효 처리되어 발생하는 제반 손실이나 불이익에 대하여 공급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1통</li> <li>•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 영주증 1통)</li> <li>•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1통</li>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및 인감도장</li> </ul>
법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1통</li> <li>•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li> <li>• 사업자등록증 1통</li> <li>•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1통</li> <li>• 법인인감(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li> <li>• 법인 등기부등본 1통</li> <li>•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주민등록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li> </ul>
제3자 대리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li> <li>•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계약용)</li> <li>•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계약 장소에 비치)</li> <li>•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li> </ul>

※ 상기 제출서류는 분양공고일(2024.11.06.)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자(수분양자)는 본 분양공고문의 제반 유의사항을 숙지하셔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금융기관.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징구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세대에 대한 호수 및 면적조정, 분양가격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내 도시형생활주택,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배치, 구조 및 향, 층수, 호수별 위치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사업계획승인 사항 및 계약 장소에 비치한 설계도서 기준에 의거 분양하는 조건임.
- 공정에 따라 추후 설계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계약자(수분양자)는 설계 변경에 동의해야 함.  
미동의 시 계약자(수분양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함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름.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이에 대한 미납부 및 기타 행정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수분양자)에게 있음.
- 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도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분양계약 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분양 계약일 전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람.

과세문서 기준금액	세액(수입인지 가격)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0,000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350,000원

#### 4. 기타 계약자 안내

##### ▣ 담보신탁

1. 분양대상 목적물이 신영부동산신탁(주)에 담보신탁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갑"은 "을"이 분양대금을 완납할 시 본 분양대상 목적물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소유권이전하여야 한다.
2. 본 분양대상 목적물의 분양수입금은 자금관리사무대리계약에 따라 신영부동산신탁(주) 계좌로 입금한다.
3. 신영부동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은 반드시 신영부동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4.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5.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6.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최초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

- 본 건축물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매가 가능하나, 공급자는 이를 알선하지 않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공급자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사용승인일 : 2024년 03월 29일
- 최초 입주일 : 2024년 04월
- 본 입주자 모집공고상 입주일 2024년 12월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선수관리비는 퇴거시 정산·반환됩니다.

## 5. 기타 유의사항 ※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공통 유의사항

- 본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후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비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 또는 이전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법령에 따라 관련 세금(취득세 등)이 중과 또는 가산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업계획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 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및 오탈자로 인해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시어 계약시 착오없으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세대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 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마감자재의 내용은 타입별 등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세대를 직접 방문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바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공동주택 지붕층 및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도시형생활주택,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함.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주차차단기,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주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단지 내 통행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건물배치의 특성 및 층, 호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르고 사생활의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각 세대별 공급금액은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 중 입주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주민등록등본 포함)을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로 필히 제출 하시기 바람, 미제출로 인하여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분양홍보관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공동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시공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됨.
- 주민공동시설, 휴게공간,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주요 마감재 및 가구패턴, 각종 가전 및 기구 등 마감계획은 계약세대를 직접 방문 확인하시고 계약하여야 함.
- 단지내 주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 모든 공용시설물은 도시형생활주택,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입주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별도의 구획, 분리를 요구할 수 없음.

- 호실 내에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현장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 ▣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단지 내·외부 여건과 관련하여 계약전 반드시 현장 및 세대를 방문하시어 세대내마감, 단지내·외부 여건, 일조/조망, 소음/진동, 진출입여건, 주차여건,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이사동선, 교육 및 편의시설, 인접 건축물 현황, 혐오시설 유무, 주변개발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셔야 하며, 계약은 현재 건축된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계약 이후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해약이 불가함.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 조망,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주변에는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기존 노후주택이 있으며, 일부세대에 근접하여 조망권 및 생활, 환경권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민공시시설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제공집기 및 마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함.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타입에 따라 외부창호의 디자인, 각 세대내 벽체의 위치 및 두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세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 수거함,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공동주택의 난방은 개별난방 방식임.
- 차량 출입구 및 보행공간 설치로 인해 차량 진출입에 따른 차량불빛 간섭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통행 및 지하층 주차계획으로 일부세대에 현회현상 발생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하부에 필로티층이 설치되어 상부층 세대는 외부 차량 통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자 동선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간섭, 사생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부대 복리시설의 냉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이 지상층 단지 외부로 노출되어 통행 및 세대간섭,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공 과정 중 위치, 형태 및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 배치상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차량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주차계획은 본 공사시 설치위치, 주차대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지하층 지하주차장 상부, 건물 외벽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 될 수 있음.
  - 외부마감재는 수성페인트, 노블스톤, 도장 및 석재, 포세리타일이 이 혼용되어 있음.
  - 최상층세대의 옥상공간은 해당 입주자가 사용함을 일반세대 입주자가 동의함
  - 최상층세대의 옥상공간은 개인 소유면적으로 등기 할 수 없음.
  - 최상층세대, 일반세대의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 같음.
  - 단지 경관조명으로 인한 저층세대의 빛공해가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옥상공간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음.
  - 옥상출입문은 평상시 자동잠금장치로 화재시 등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만 개방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층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인접세대는 운행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주차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불가능하거나 부족한 세대가 있으므로 계약 전에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욕실에 이질재 접합부 (콘크리트, 조적) 가 있으며, 크랙 유도를 위한 줄눈이 추가됨.
  - 세대 내 가구, 문선, 몰딩 등 고정을 위한 타정기 시공으로 핀자국이 발생함.
  - 세대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질 또는 동급의 성능이상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
  - 주동 색채 및 외부특화마감, 옥탑마감, 옥외시설물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에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 설비점검구 등이 설치되며, 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
  - 일부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빌트인 가전제품의 A/S기간은 제조사 A/S기준임.
- 주방가구 상부장 내부에 렌지후드에서 배기되는 주름관이 설치됨.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사용자의 생활환경 여건에 따라 창호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6층 상부인 지붕층에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되어 있음.(A, D타입 해당)
- 옥상에는 옥상조경이 설치되어 있음.(승강기실 배면에 위치)
- 주차차단기는 주차차단기 근접 주차라인 주차 시 출차와 관계없이 개방될 수 있음.
- 차량입차용 RF카드는 1가구 당 1장씩 지급됨.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 임.
- 개인적인 인테리어공사등으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책임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단지내 구립어린이집 설계로 인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과 공유로 사용하여야 할 일부 어린이집 인접 대지 및 건축면적이 어린이집 전용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
-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 및 근린생활시설 입점자의 사생활보호, 소음등 편의를 위하여 단지내 구립어린이집을 별도 구획화하는데 동의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됨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항목	적용여부	항목	적용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공용화장실 없음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친환경계획관련 등급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 : 1등급, 녹색건축예비인증 : 일반(그린4등급) ※ 본인증시 변경될 수 있음.

▣ 내진설계등급 : I 등급(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표기), 내진능력 : MMI 등급 진도 VII(0.204g)

▣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모집공고(2023.11.2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홍보관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48-11번지 근린생활시설 103호

▣ 분양문의 : 02-995-5949

※ 본 분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홍보관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